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환경,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 따라 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조정하고,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필요시 위원을 임시적으로 임명 및 위촉(안 제2조)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)
- 소위원회 구성을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확장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-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개정(안 제2조, 제11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개정(2007.01.02)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이 폐지되고 조직 개편(2007. 08. 24) 및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환경,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(안 제2조)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필요 시 위원을 임시적으로 임명 및 위촉토록 함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)
- 소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(안 제8조) 전문성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
- 조직 개편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(안 제2조, 제11조, 제14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(개정 2007. 01. 02) 및 기타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

- 환경, 기계, 전자제어 등 특수기술부분과 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하고, 소위원회 구성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서 설계자문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